라이나생명
A Chubb Company

무배당
새로담는요양병원및의원간병인사용입원특약
(특정경증질환제외)

약관

목차

제 1 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3
제 1 조 【목적】 3
제 2 조 【용어의 정의】 3
제 2 관 보험금의 지급 4
제 3 조 【"입원"의 정의와 장소】 4
제 4 조 【"간병인", "간병인 사용" 및 "간병인 사용금액"의 정의】 4
제 5 조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정의】 4
제 6 조 【"요양병원 및 의원"의 정의】 4
제 7 조 【"특정경증질환"의 정의】 5
제 8 조 【법령 개정에 따른 특약 내용의 변경】 5
제 9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5
제 10 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5
제 11 조 【보험금 등의 청구】 6
제 12 조 【보험금 등의 지급절차】 7
제 3 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7
제 13 조 【특약의 체결 및 소멸】 7
제 14 조 【특약내용의 변경】 8
제 15 조 【특약의 보험기간】 8
제 4 관 보험료의 납입 8
제 16 조 【보험료의 납입 및 회사의 보장개시】 8
제 17 조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특약의 해지】 8
제 18 조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8
제 5 관 계약의 해지 및 해약환급금 8
제 19 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8
제 20 조 【해약환급금】 8
제 6 관 기타사항 등 9
제 21 조 【주계약 약관 및 단체취급특약 규정의 준용】 9
(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9
(별표 2)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10
(별표 3) 질병 및 재해분류표 10
(별표 4) 재해분류표 11
(별표 5) 특정경증질환 분류표 11

무배당 새로담는요양병원및의원간병인사용입원특약(특정경증질환제외) 약관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1조【목적】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이하'주계약'이라 합니다)에 부가되어 보험계약자(이하'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 사이에 피보험자의 질병 또는 재해에 대한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관계 관련 용어
   - 가. 계약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 나. 보험수익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 다. 보험증권: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 라.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2. 지급사유 관련 용어
   - 가. 재해: 별표 4(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재해를 말합니다.
   - 나. 질병 또는 재해: 별표 3(질병 및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질병 또는 재해를 말합니다.
   - 다. 중요한 사항: 계약 전 알릴 의무와 관련하여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승낙하는 등 계약 승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피보험자가 가입을 할 수 있는 최대 보험가입금액을 제한하는 방법

【일부 보장 제외】
일반적인 경우보다 위험이 높은 피보험자가 가입하기 위한 방법 중의 하나로, 특정 질병 또는 특정 신체 부위를 보장에서 제외하는 방법

【보험금 삭감】
일반적인 경우보다 위험이 높은 피보험자가 가입하기 위한 방법 중의 하나로, 보험 가입 후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위험의 크기 및 정도가 점차 감소하는 위험에 대해 적용하여 보험 가입 후 일정기간 내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미리 정해진 비율로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방법

【보험료 할증】
일반적인 경우보다 위험이 높은 피보험자가 가입하기 위한 방법 중의 하나로, 보험 가입 후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위험의 크기 및 정도가 점차 증가하는 위험 또는 기간의 경과에 상관없이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는 위험에 적용하여 위험정도에 따라 해당 보험료 이외에 특별보험료를 부가하는 방법

3. 지급금과 이자율 관련 용어
   - 가. 연단위 복리: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 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액을 다음 1 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연단위 복리 예시】
원금 100원, 연간 10% 이자율 적용시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2년 시점의 총 이자 금액
- 1년차 이자 = 100원(원금) × 10% = 10원
- 2년차 이자 = (100원(원금) + 10원(1년차 이자)) × 10% = 11원
→ 2년 시점의 총 이자금액 = 10원 + 11원 = 21원

나. 평균공시이율: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이 특약 체결 시점(갱신계약의 경우 갱신 시점)의 이율을 말하며, 평균공시이율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련법규 등의 변경으로 이 특약 갱신 시점에 평균공시이율이 더 이상 산출되지 않거나 발표되지 않는 경우에는 평균공시이율 대신 변경된 법규 등에서 정한 이율을 적용하며, 갱신 이후 적용될 이율을 계약자에게 안내합니다.

다. 해약환급금: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4.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가. 보험기간: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나.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니다.

제2관 보험금의 지급

제3조【"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약에 있어서 "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별표3(질병 및 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질병 또는 재해(이하 "질병 또는 재해"라 합니다)로 인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4조【"간병인", "간병인 사용" 및 "간병인 사용금액"의 정의】

① 이 특약에 있어서 "간병인"이라 함은 유상으로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을 하는 자로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소속되어 급여를 받는 자 또는 사업자를 등록하거나 사업자 등록된 업체를 통하여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고 해당 서비스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급받는 것이 확인된 자를 말합니다.

② 제1항에서 사업자는 간병관련 업종에 해당되어야 하며, 국세청 업종코드 기준 '개인 간병 및 유사 서비스업' 또는 '개인간병인' 등 간병인 제공 또는 간병인 중개서비스를 영위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때, 간병인 중개서비스 사업자는 '직업안정법'상 직업소개사업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③ 제1항에서 간병서비스라 함은 간병인이 피보험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하였을 경우 피보험자를 위하여 신체활동 지원, 정서지원, 환경관리, 안전관리, 활동관리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제5조("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정의)에서 정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제외합니다.

> 【간병인의 주요업무 (예시)】
> 침대높낮이 조정, 화장실 부축, 체위변경, 휠체어를 이용한 환자 이동, 기저귀 교환, 피부위생관리, 식사보조, 휴식돕기, 변기사용 보조 등

④ 이 특약에 있어서 "간병인 사용"이라 함은 제1항에서 정한 "간병인"을 사용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간병인 사용"은 1일을 기준으로 하며 간병인을 사용한 시점을 기준으로 매 24시간을 1일이라 합니다. 다만, 피보험자의 사정으로 '간병인'을 24시간 미만으로 사용한 경우에도 1일로 간주합니다

⑤ 이 특약에 있어서 "간병인 사용금액"이라 함은 제4항에서 정한 "간병인 사용"의 연속적인 간병인 사용일마다 총 간병인 사용금액을 총 간병인 사용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판단합니다. 간병일 사용일의 연속여부 판단은 날짜를 기준으로 하며, 간병 사용 시작일자와 간병 사용 종료일자 사이에 간병인을 사용하지 않은 날짜가 없는 경우에 간병인 사용일이 연속된 것으로 봅니다. 이때, 간병인을 사용한 시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간병인을 사용한 날짜가 연속된 경우 간병인 사용은 연속된 것으로 봅니다.

제5조【"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정의】

이 특약에 있어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라 함은 의료법 제4조의2(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에서 정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말합니다.

제6조【"요양병원 및 의원"의 정의】

① 이 특약에서 "요양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 제3호에서 규정한 요양병원 및 국외의 의료관련 법에서 정한 요양병원을 말합니다.

② 이 특약에서 "의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한 의원 및 국외의 의료관련 법에서 정한 의원을 말합니다.

제7조 【"특정경증질환"의 정의】

이 특약에 있어서 "특정경증질환"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별표5(특정경증질환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제8조 【법령 개정에 따른 특약 내용의 변경】

① 제4조("간병인", "간병인 사용" 및 "간병인 사용금액"의 정의)의 "간병인"의 정의, 제5조("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정의)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정의 또는 제6조("요양병원 및 의원"의 정의")의 "요양병원" 및 "의원"의 정의가 의료법 및 관련 법령(이하 "법령"이라 합니다)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시점의 법령에 따른 기준을 적용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기존 계약내용에 상응하는 새로운 보장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리며, 보장내용 및 보험료 등의 변경사항을 제3항에 따라 계약자에게 안내합니다.

1. 법령의 개정에 따라 보험금 지급사유 관련 판정기준 제도가 폐지되는 경우
2. 법령의 개정에 따라 보험금 지급사유 관련 판정기준 제도의 변경으로 보험금 지급사유 해당 여부 판정이 불가능한 경우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법령의 개정에 따라 보험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해칠 수가 있거나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는 등의 사유로 금융위원회의 명령이 있는 경우

③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안내할 때에는 계약내용 변경일의 15일 이전까지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취)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보장내용 및 보험가입금액 변경내역, 보험료 수준, 계약내용 변경 절차 등을 계약자에게 2회 이상 알립니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약관내용 변경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 특약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내용 변경시점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⑤ 제2항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보장내용 및 보험가입금액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⑥ 제2항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납입보험료가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내용 변경 시점 이후 잔여보험기간의 보장을 위한 재원인 계약자적립액 정산으로 계약자가 추가로 납입하여야 할(또는 반환 받을)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9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질병 또는 재해(특정경증질환 제외)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1일이상 계속하여 요양병원 또는 의원에 입원하고 제4조("간병인", "간병인 사용" 및 "간병인 사용금액"의 정의)에서 정한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는 사용한날에 대하여 보험수익자에게 요양병원 및 의원 간병인사용 입원급여금(특정경증질환 제외) (단, 간병인 사용일수 1일당, 1회 입원당 사용일수 180일 한도) (별표1 "보험금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제10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합니다.

② 보험계약일부터 1년이 지난 보험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제9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입원급여금의 50%를 지급합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한 경우에는 감액없이 요양병원 및 의원 간병인사용 입원급여금(특정경증질환 제외)을 지급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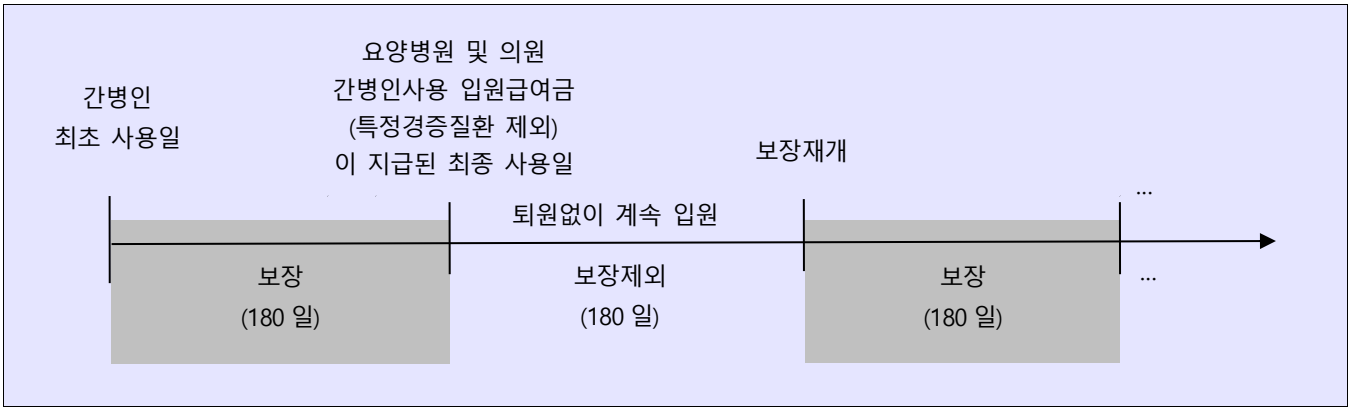
④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보험계약일부터 1년이 지난 보험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발생하였다 할지라도 간병인 사용일이 보험계약일부터 1년 이후까지 계속되었을 경우, 1년 미만의 기간에 대하여는 간병인 사용일수 1일당 해당 입원급여금의 50%를 지급하며, 1년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는 간병인 사용일수 1일당 해당 입원급여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⑤ 제9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경우 피보험자가 요양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는 1회 입원으로 봅니다.

⑥ 제9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간병인 사용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을 최고 한도로 합니다.

⑦ 피보험자가 동일한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1회 입원으로 간주하여 각 간병인 사용일수를 더하고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질병 또는 재해에 의한 입원이라도 요양병원 및 의원 간병인사용 입원급여금(특정경증질환 제외)이 지급된 최종 간병인 사용일의 다음 날부터 180일이 지난 후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에는 새로운 입원에 대한 간병인의 사용으로 봅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 요양병원 및 의원 간병인사용 입원급여금(특정경증질환 제외)이 지급된 최종 간병인 사용일부터 180일이 경과하도록 퇴원없이 계속 입원중인 경우에는 요양병원 및 의원 간병인사용 입원급여금(특정경증질환 제외)이 지급된 최종 간병인 사용일의 다음 날부터 180일이 지난 후 사용한 간병인은 새로운 입원에 대한 간병인의 사용으로 봅니다.



⑨ 제9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입원기간 중 보험기간이 끝났을 때에도 그 계속 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계속 요양병원 및 의원 간병인사용 입원급여금(특정경증질환 제외)을 지급합니다.

⑩ 제9조(보험금의 지급사유)는 요양병원 또는 의원에 입원하여 간병인을 실제 사용한 날을 합산하여 적용하며, 간병인을 사용하지 않은 날에 대해서는 요양병원 및 의원 간병인사용 입원급여금(특정경증질환 제외)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실제 사용한 날"에 대한 지급 예시】

(특약보험가입금액 : 500만원 기준)

- 요양병원 또는 의원에 입원한 기간
  : 2024년 1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15일까지
- 요양병원 또는 의원에 입원하며 간병인의 간병서비스를 실제 사용한 간병인 사용기간 및 간병인 사용금액
  : 2024년 11월 15일부터 2024년 11월 30일까지 (16일), 총 간병인 사용금액 96만원
  (96만원 ÷ 16일 = 6만원, 간병인 사용 1일당 평균 5만원 이상 해당)

→ 사용일수 한도에 따른 지급대상 간병인 사용일수 : **16일**

→ 간병인 사용일당(요양병원 및 의원) 지급금액 : 80만원 (16일 X 5만원)

※ 상기 "간병서비스를 실제 사용한 기간" 외의 입원기간에 대해서는 요양병원 및 의원 간병인사용 입원급여금(특정경증질환 제외)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지급기준은 계속되는 간병인 사용일마다 총 간병인 사용금액을 총 간병인 사용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판단합니다.

※ 단, 보험계약일부터 1년이 지난 보험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상기 금액의 50%를 지급합니다.

⑪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제9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⑫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9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11조【보험금 등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입원증명서, 입원치료확인서, 간병인 사용 확인서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제1항 제2호의 "간병인 사용 확인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합니다.

1. **입원간병인 사용확인서**
2. **간병인 사용 영수증**
   (사업자등록된 업체가 발행한 영수증으로 사업자등록번호를 포함하여야 하며, 간이영수증을 제외한 카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이어야 합니다.)
3. **사업자등록증**

③ 회사는 간병인 필요사유 및 실제 사용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간병인, 병원종사자

등의 사실관계 확인 또는 추가적인 증빙서류(간병인사용계약서, 간병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간병근무일지, 간호기록 등)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④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단, 간병인 사용 확인서는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내용을 따릅니다.

제12조【보험금 등의 지급절차】

① 회사는 제11조(보험금 등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험금 등을 지급할 때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는 별표2(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와 같이 계산합니다.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확인하기 위하여 제1항의 지급기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 제도(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이내를 지급)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즉시 통지하여 드립니다. 다만, 지급예정일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1조(보험금 등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1. 소송제기
2. 분쟁조정신청(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또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3. 수사기관의 조사
4.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
5. 제5항에 따른 회사의 조사요청에 대한 동의 거부 등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와 확인이 지연되는 경우
6. 제10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2항에 따라 보험금지급사유 등에 대해 제3자의 의견에 따르기로 한 경우

④ 제3항에 의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회사는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제1항 및 제3항의 보험금 지급사유조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 조사 요청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⑥ 회사는 제5항의 서면조사에 대한 동의 요청시 조사목적, 사용처 등을 명시하고 설명합니다.

【보험금 가지급제도】
지급기한 내에 보험금이 지급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될 경우 예상되는 보험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제도를 말하며, 이는 피보험자가 당장 필요로 하는 비용을 보전해주기 위해 회사가 먼저 지급해주는 임시 급부금입니다.

제3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3조 【특약의 체결 및 소멸】

① 이 특약은 주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주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에 이 특약을 청약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에 부가하여 이 특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③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1. 주계약이 해지 또는 기타 사유에 따라 효력이 없어진 경우. 다만, 주계약의 보험금 지급으로 인하여 주계약이 소멸하는 경우 또는 특약의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이후에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으로 해약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효력을 갖습니다.

2.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

④ 제3항 제2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종선고】

어떤 사람의 생사불명 상태가 일정기간 이상 계속될 때 일정절차에 따라 법원이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제14조 【특약내용의 변경】

① 회사는 계약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때 동일 내용으로 변경합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합니다.

② 회사는 계약자가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20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이 경우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최초 가입 시 안내한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③ 계약자는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후에는 특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제15조 【특약의 보험기간】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이 특약의 부가시에 회사가 제시한 소정의 범위내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제4관 보험료의 납입

제16조 【보험료의 납입 및 회사의 보장개시】

① 이 특약의 보험료는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주계약의 보험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하며 주계약의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그러나 제13조(특약의 체결 및 소멸) 제2항에 따라 이 특약을 체결할 경우 특약의 보험료는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특약의 보험료를 일시에 납입하여야 하며,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일 때에는 회사에서 정한 별도의 방법에 따라 제1회 특약의 보험료를 정산한 다음 차회 이후의 보험료는 주계약의 보험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완료되었거나 주계약의 보험금 지급사유 등으로 인해 주계약이 소멸된 경우라도,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이 완료되지 않았거나 면제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해야 합니다.

③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그러나, 제13조(특약의 체결 및 소멸) 제2항의 경우 특약의 청약을 승낙한 경우에는 제1회 특약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특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합니다.

제17조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특약의 해지】

①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해지됩니다. 다만, 이 특약의 보험료납입이 완료된 이후에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의하여 해약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해지되지 않습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 특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도 주계약에서 정한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③ 제1항에 따라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20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18조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효력회복)의 규정에 따라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

②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청약시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약도 동시에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③ 이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의 보장개시일은 제16조(보험료의 납입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제5관 계약의 해지 및 해약환급금

제19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①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20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특약이 주계약 또는 특약에 의무부가 된 경우, 주계약 또는 특약 해지 시 해지 가능합니다.

제20조 【해약환급금】

① 이 약관에 따른 해약환급금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다만, 1종(해약환급금 미지급형Ⅱ)은 보험료 납입기간 중 중도 해지될 경우 해약환급금이 전혀 없으며,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된 이후 계약이 중도 해지되는 경우 해약환급금은 2종(기본형)의 해약환급금 대비 적습니다.

【해약환급금 관련 유의사항】

1. 1종(해약환급금 미지급형Ⅱ)은 2종(기본형)보다 낮은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는 대신, 보험료 납입기간 중 계약이 중도 해지될 경우 해약환급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된 이후 계약이 중도 해지되는 경우 2종(기본형) 해약환급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약환급금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라도 보험료 납입기간 중 계약이 해지될 경우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2. "보험료 납입기간"이란 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료를 납입하기로 한 기간(년수)이 경과한 계약해당일의 전일까지를 말합니다. 다만, 보험료 납입이 연체된 경우에는 보험료 총액의 납입이 완료된 날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보험료를 선납하여 보험료 납입기간이 도달하기 전에 보험료 총액의 납입이 완료된 경우라 하더라도 계약 체결시 약정한 보험료 납입기간을 말합니다.
3. 2종(기본형)의 해약환급금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해지율을 적용하지 않고 계산합니다.

② 해약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회사에 해약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회사는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해약환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별표2(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에 따릅니다.

③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제6관 기타사항 등

제21조 【주계약 약관 및 단체취급특약 규정의 준용】

①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② 주계약에 단체취급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약에 대하여도 단체취급특약의 규정을 따릅니다.

(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보험금 지급기준표

[기준: 특약보험가입금액]

<table>
<tr><th>급부명</th><th>지급사유</th><th colspan="2">지급금액</th></tr>
<tr><td rowspan="2">요양병원
및 의원
간병인사용
입원급여금(특정
경증질환 제외)</td><td rowspan="2">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질병 또는 재해(특정경증질환 제외)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1일이상 계속하여 요양병원 또는 의원에 입원하고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하였을 때
(단, 간병인 사용일수 1일당, 1회 입원당 사용일수 180일 한도)</td><td>간병인
사용금액이
1일당 5만원
이상인 경우</td><td>간병인 사용일수 1일당 특약보험가입금액의 1%
(단, 보험계약일부터 1년이 지난 보험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상기 금액의 50%를 지급)</td></tr>
<tr><td>간병인
사용금액이
1일당 5만원
미만인 경우</td><td>간병인 사용일수 1일당 특약보험가입금액의 0.5%
(단, 보험계약일부터 1년이 지난 보험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상기 금액의 50%를 지급)</td></tr>
</table>

주) 1.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합니다.

2.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피보험자 사망시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는 대신 보험료 중 일정액을 할인하여 보험료를 산정한 상품으로 피보험자 사망시 계약자적립액은 별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3. 보험계약일부터 1년이 지난 보험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입원급여금의 50%를 지급합니다.
4. 3)에도 불구하고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보험계약일부터 1년이 지난 보험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발생하였다 할지라도 간병인 사용일이 보험계약일부터 1년 이후까지 계속되었을 경우, 1년 미만의 기간에

대하여는 간병인 사용일수 1일당 해당 입원급여금의 50%를 지급하며, 1년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는 간병인 사용일수 1일당 해당 입원급여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5. 요양병원 및 의원 간병인사용 입원급여금(특정경증질환 제외)의 간병인 사용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을 최고 한도로 합니다.

(별표2)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구분	적립기간	지급이자
요양병원 및 의원 간병인사용 입원급여금(특정경증질환 제외) (제9조)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30 일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지급기일의 31 일이후부터 60 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가산이율(4.0%)
	지급기일의 61 일이후부터 90 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가산이율(6.0%)
	지급기일의 91 일이후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가산이율(8.0%)
해약환급금 (제20조 제1항)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청구일까지의 기간	1년이내: 평균공시이율의 50% 1년초과기간: 평균공시이율의 40%
	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주) 1. 지급이자의 계산은 연단위 복리로 일자 계산하며, 주계약의 약관에서 정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2. 계약자 등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자 등이 분쟁조정을 신청했다는 사유만으로 이자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3. 가산이율 적용시 제12조(보험금 등의 지급절차)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지연된 경우에는 해당기간에 대하여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4. 가산이율 적용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대하여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5. 보험사가 해지권을 행사하는 경우 위 표의 '청구일'은 보험사의 해지 의사표시(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포함)가 보험계약자 또는 그의 대리인에게 도달한 날로 봅니다.

(별표3) 질병 및 재해분류표

질병 및 재해분류표

1. 보장대상이 되는 질병 및 재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질병 및 재해는 이 보험의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A00~Y98)에 해당하는 질병 및 재해

②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규정한 제1급감염병

2.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질병 및 재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질병 및 재해분류에서 제외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① 정신 및 행동 장애(F00~F99)로 인한 질병

② 선천기형, 변형 및 염색체이상(Q00~Q99)으로 인한 질병

③ 마약, 습관성 의약품 및 알코올중독으로 인한 경우

④ 치의보철 및 미용상의 처치로 인한 경우

⑤ 정상임신, 분만전후의 간호 및 검사와 인공유산, 불법유산 등으로 인한 경우

⑥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지 않는 불임수술 또는 제왕절개수술 등으로 인한 경우

⑦ 치료를 수반하지 않는 건강진단으로 인한 경우

(주) 1. ( ) 안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0-175호, 2021.1.1시행)상의 분류번호를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2. 제9차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 여부는 진단확정일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3. 진단확정일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 위 1. 보장대상이 되는 질병 및 재해 ②에 해당하는 감염병은 진단확정일 당시 시행중인 법률을 적용합니다.

(별표4) 재해분류표

재해분류표

1. 보장대상이 되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는 이 보험의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S00~Y84)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②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한 제1급감염병

2.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분류에서 제외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①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 요인으로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된 경우

② 사고의 원인이 다음과 같은 경우

- 과잉노력 및 격심한 또는 반복적 운동(X50)
- 무중력환경에서의 장기간 체류(X52)
- 식량부족(X53)
- 물부족(X54)
- 상세불명의 결핍(X57)
- 고의적 자해(X60~X84)
- "법적 개입" 중 법적 처형(Y35.5)

③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 환자의 재난(Y60~Y69)" 중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단, 처치 당시에는 재난에 대한 언급이 없었으나 환자의 이상반응 또는 이후 합병증의 원인이 된 외과적 및 기타 내과적 처치(Y83~Y84)는 보장)

④ "자연의 힘에 노출(X30~X39)" 중 급격한 액체손실로 인한 탈수

⑤ "우발적 익사 및 익수(W65~W74), 호흡과 관련된 기타 불의의 위협(W75~W84), 눈 또는 인체의 개구부를 통하여 들어온 이물(W44)" 중 질병에 의한 호흡장해 및 삼킴장해

⑥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U00~U99)에 해당하는 질병

㈜ 1. ( ) 안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0-175호, 2021.1.1. 시행)상의 분류번호를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재해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2. 제9차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재해 해당 여부는 진단확정일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3. 진단확정일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재해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재해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 위 1. 보장대상이 되는 재해 ②에 해당하는 감염병은 진단확정일 당시 시행중인 법률을 적용하며, 2.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재해 ⑥에 해당하더라도 보장대상에서 제외하지 않습니다.

(별표5) 특정경증질환 분류표

특정경증질환 분류표

Ⅰ. 약관에서 규정하는 "특정경증질환"은 제 8 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 2020-175 호, 2021.1.1 시행)에 의거 다음으로 분류된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구분	분 류 항 목	분류번호
1	감염성 및 상세불명 기원의 기타 위장염 및 결장염	A09.0~A09.9
2	수염 및 두피 백선	B35.0

	손발톱백선	B35.1
	손백선	B35.2
	발백선	B35.3
	체부백선	B35.4
	와상백선	B35.5
	사타구니백선	B35.6
	기타 피부백선증	B35.8
	상세불명의 백선증	B35.9
3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2 형 당뇨병	E11.9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영양실조-관련 당뇨병	E12.9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기타 명시된 당뇨병	E13.9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상세불명의 당뇨병	E14.9
4	기타 및 상세불명의 순수고콜레스테롤혈증	E78.08
	순수 고글리세라이드혈증	E78.1
	혼합성 고지질혈증	E78.2
	고카일로마이크론혈증	E78.3
	기타 고지질혈증	E78.4
	상세불명의 고지질혈증	E78.5
	지질단백결핍	E78.6
	지질단백대사의 기타 장애	E78.8
	지질단백대사의 상세불명 장애	E78.9
5	맥립종 및 콩다래끼	H00.0~H00.1
6	눈물계통의 장애	H04.0~H04.9
7	결막염	H10.0~H10.9
8	노년백내장	H25.0~H25.9
9	굴절 및 조절의 장애	H52.0~H52.7
10	외이의 농양	H60.0
	외이의 연조직염	H60.1
	기타 감염성 외이도염	H60.3
	급성 비감염성 외이도염	H60.5
	기타 외이도염	H60.8
	상세불명의 외이도염	H60.9
11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I10.9
12	급성 비인두염[감기]	J00
13	급성 부비동염	J01.0~J01.9
14	급성 인두염	J02.0~J02.9
15	급성 편도염	J03.0~J03.9
16	급성 후두염 및 기관염	J04.0~J04.2
17	다발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급성 상기도감염	J06.0~J06.9
18	폐렴마이코플라스마에 의한 급성 기관지염	J20.0
	인플루엔자균에 의한 급성 기관지염	J20.1
	연쇄알균에 의한 급성 기관지염	J20.2
	상세불명의 급성 기관지염	J20.9
19	혈관운동성 및 알레르기성 비염	J30.0~J30.4
20	만성 비염	J31.0

	만성 비인두염 만성 인두염	J31.1 J31.2
21	만성 부비동염	J32.0~J32.9
22	기타 알레르기천식, 간헐성 및 경증 지속성 상세불명의 주로 알레르기성 천식 기타 비알레르기천식, 간헐성 및 경증 지속성 상세불명의 비알레르기천식 기타 혼합형 천식	J45.01 J45.09 J45.11 J45.19 J45.88
23	위-식도역류병	K21.0~K21.9
24	출혈 또는 천공이 없는 급성 위궤양 출혈 또는 천공이 없는 만성 위궤양 출혈 또는 천공이 없는 급성인지 만성인지 상세불명인 위궤양	K25.3 K25.7 K25.9
25	출혈 또는 천공이 없는 급성 상세불명 부위의 소화성 궤양 출혈 또는 천공이 없는 만성 상세불명 부위의 소화성 궤양 출혈 또는 천공이 없는 급성인지 만성인지 상세불명인 상세불명 부위의 소화성 궤양	K27.3 K27.7 K27.9
26	위염 및 십이지장염	K29.0~K29.9
27	기능성 소화불량	K30
28	독성 위장염 및 결장염 알레르기성 또는 식사성의 위장염 및 결장염 불확정 결장염 기타 명시된 비감염성 위장염 및 결장염 상세불명의 비감염성 위장염 및 결장염	K52.1 K52.2 K52.3 K52.8 K52.9
29	과민대장증후군	K58.1~K58.8
30	변비 기능성 설사 달리 분류되지 않은 신경성 장 항문연축 기타 명시된 기능성 장장애 상세불명의 기능성 장장애	K59.0 K59.1 K59.2 K59.4 K59.8 K59.9
31	달리 분류되지 않은 지방(변화성)간 상세불명의 간질환	K76.0 K76.9
32	베스니에가려움발진 기타 아토피성 피부염 상세불명의 아토피성 피부염	L20.0 L20.88 L20.9
33	금속에 의한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 접착제에 의한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 화장품에 의한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 피부에 묻은 약물에 의한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 색소에 의한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 기타 화학물질에 의한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 피부에 묻은 음식물에 의한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 음식물을 제외한 식물에 의한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 기타 요인에 의한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 상세불명 원인의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	L23.0 L23.1 L23.2 L23.3 L23.4 L23.5 L23.6 L23.7 L23.8 L23.9
34	알레르기성 두드러기 특발성 두드러기	L50.0 L50.1

	한랭 및 열에 의한 두드러기	L50.2
	피부묘기성 두드러기	L50.3
	진동성 두드러기	L50.4
	콜린성 두드러기	L50.5
	접촉두드러기	L50.6
	재발성 주기성 두드러기	L50.81
	기타 두드러기	L50.88
	상세불명의 두드러기	L50.9
35	기타 관절염	M13.0~M13.9
36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기타 척추증	M47.2
	기타 척추증	M47.8
	상세불명의 척추증	M47.9
37	기타 경추간판변성	M50.3
	상세불명의 경추간판장애	M50.9
38	기타 명시된 추간판변성	M51.3
	쉬몰결절	M51.4
	기타 명시된 추간판장애	M51.8
	상세불명의 추간판장애	M51.9
39	목 및 등을 침범하는 지방층염	M54.0
	경추통	M54.2
	좌골신경통	M54.3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M54.4
	요통	M54.5
	흉추통증	M54.6
	기타 등통증	M54.8
	상세불명의 등통증	M54.9
40	석회성 힘줄염	M65.2
	방아쇠손가락	M65.3
	기타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M65.8
	상세불명의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M65.9
41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M75.0
	이두근 힘줄염	M75.2
	상세불명의 어깨병변	M75.9
42	손목의 관절주위염	M77.2
	종골돌기	M77.3
	발의 기타 골부착부병증	M77.5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골부착부병증	M77.8
	상세불명의 골부착부병증	M77.9
43	근통	M79.1
	상세불명의 신경통 및 신경염	M79.2
	(무릎뼈밑) 지방체의 비대	M79.4
	사지의 통증	M79.6
	기타 명시된 연조직장애	M79.8
	상세불명의 연조직장애	M79.9
44	병적 골절이 없는 골다공증	M81.0~M81.9
45	급성 방광염	N30.0

	상세불명의 방광염	N30.9
46	만성 전립선염 전립선방광염 전립선의 기타 염증성 질환 전립선의 상세불명의 염증성 질환	N41.1 N41.3 N41.8 N41.9
47	급성 질염 아급성 및 만성 질염 급성 외음염 아급성 및 만성 외음염 질의 궤양 외음의 궤양	N76.0 N76.1 N76.2 N76.3 N76.5 N76.6
48	폐경 및 여성의 갱년기상태 폐경후 위축성 질염 상세불명의 폐경 및 폐경전후 장애	N95.1 N95.2 N95.9
49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천장관절의 염좌 및 긴장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S33.5 S33.6 S33.7
50	손목의 염좌 및 긴장 손가락의 염좌 및 긴장 손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S63.5 S63.6 S63.7
51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S83.6
52	발가락의 염좌 및 긴장 발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S93.5 S93.6
53	장병원성 대장균감염 장독소생산 대장균감염 장침투성 대장균감염 기타 장대장균감염 상세불명의 세균성 장감염	A04.0 A04.1 A04.2 A04.4 A04.9
54	기타 성행위로 전파되는 클라미디아 질환	A56.0~A56.8
55	편모충증	A59.0~A59.9
56	항문생식기의 헤르페스바이러스[단순헤르페스]감염	A60.0~A60.9
57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주로 성행위로 전파되는 질환	A63.0~A63.8
58	헤르페스습진 헤르페스바이러스 소수포피부염 헤르페스바이러스 치은구내염 및 인두편도염 헤르페스바이러스눈병 파종성 헤르페스바이러스병 기타 형태의 헤르페스바이러스감염 상세불명의 헤르페스바이러스감염	B00.0 B00.1 B00.2 B00.5 B00.7 B00.8 B00.9
59	기타 합병증을 동반한 대상포진 합병증이 없는 대상포진	B02.8 B02.9
60	바이러스사마귀	B07
61	기타 오르토폭스바이러스감염 전염성 물렁종 감염성 홍반[제 5 병]	B08.0 B08.1 B08.3

	발진을 동반한 엔테로바이러스소수포구내염 기타 명시된 피부 및 점막병변이 특징인 바이러스감염	B08.4 B08.8
62	바이러스결막염	B30.0~B30.9
63	칸디다구내염 피부 및 손발톱 칸디다증 외음 및 질의 칸디다증 기타 비뇨생식기 부위의 칸디다증 상세불명의 칸디다증	B37.0 B37.2 B37.3 B37.4 B37.9
64	달리 분류된 기타 질환에서의 기타 뇌신경장애	G53.8
65	정중신경의 기타 병변 팔의 기타 단일신경병증 팔의 상세불명 단일신경병증	G56.1 G56.8 G56.9
66	이상감각성 대퇴신경통 대퇴신경의 병변 외측오금신경의 병변 내측오금신경의 병변 발목터널증후군 발바닥신경의 병변 다리의 기타 단일신경병증 다리의 상세불명 단일신경병증	G57.1 G57.2 G57.3 G57.4 G57.5 G57.6 G57.8 G57.9
67	귓바퀴의 비감염성 장애 귀지떡 외이의 상세불명 장애	H61.1 H61.2 H61.9
68	급성 장액성 중이염 기타 급성 비화농성 중이염 만성 장액성 중이염 만성 점액성 중이염 상세불명의 비화농성 중이염	H65.0 H65.1 H65.2 H65.3 H65.9
69	급성 화농성 중이염 기타 만성 화농성 중이염 상세불명의 화농성 중이염 상세불명의 중이염	H66.0 H66.3 H66.4 H66.9
70	귀의 퇴행성 및 혈관성 장애 청신경의 장애	H93.0 H93.3
71	바이러스가 확인되지 않은 인플루엔자	J11.0~J11.8
72	상세불명의 급성 하기도감염	J22
73	코의 농양, 종기 및 큰종기 코선반의 비대 코 및 비동의 기타 명시된 장애	J34.0 J34.3 J34.8
74	급성인지 만성인지 명시되지 않은 기관지염	J40
75	단순성 및 점액화농성 만성 기관지염	J41.0~J41.8
76	재발성 구강 아프타 구내염의 기타 형태 입의 연조직염 및 농양	K12.0 K12.1 K12.2
77	1 도 치핵	K64.0

	2 도 치핵 잔류치핵성 쥐젖 항문주위정맥혈전증 상세불명의 치핵	K64.1 K64.4 K64.5 K64.9
78	가려움	L29.0~L29.9
79	티눈 및 굳은살	L84
80	무릎관절증	M17.0~M17.9
81	기타 관절의 원발성 관절증 기타 관절의 외상후 관절증 기타 이차성 관절증 기타 명시된 관절증	M19.0 M19.1 M19.2 M19.8
82	관절통 상세불명의 관절장애	M25.5 M25.9
83	척추협착 키스척추 외상성 척추병증 기타 명시된 척추병증 상세불명의 척추병증	M48.0 M48.2 M48.3 M48.8 M48.9
84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등병증	M53.0~M53.9
85	요도염 및 요도증후군	N34.0~N34.3
86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전립선증식증	N40.0
87	자궁경부의 염증성 질환	N72
88	자궁경부의 미란 및 외반	N86
89	경추의 염좌 및 긴장 갑상선부위의 염좌 및 긴장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S13.4 S13.5 S13.6
90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늑골 및 흉골의 염좌 및 긴장 흉부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S23.3 S23.4 S23.5
91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견쇄관절의 염좌 및 긴장 흉쇄관절의 염좌 및 긴장 견갑대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S43.4 S43.5 S43.6 S43.7
92	바이러스성 및 기타 명시된 장감염	A08.0~A08.5
93	요도주위 또는 부속선에 농양이 없는 하부 비뇨생식관의 임균감염	A54.0
94	철결핍빈혈	D50.0~D50.9
95	계절성 인플루엔자바이러스가 확인된, 기타 호흡기 증상을 동반한 인플루엔자 계절성 인플루엔자바이러스가 확인된, 기타 증상을 동반한 인플루엔자	J10.1 J10.8
96	급성 림프절염	L04.0~L04.9

(주) 제 9 차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는 진단확정일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Ⅱ. 진단확정일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